

장기요양기관 재난 상황 대응 매뉴얼

I 개 요

1. 안전위험 발생 상황

- 장기요양기관 내·외부에서 화재 발생
- 안전사고(전기, 가스)
- 자연 재난(태풍, 수해, 지진 등)

2. 대응 원칙

- 상황 발생 시 수급자의 안전한 대피 및 구조를 최우선 수행
- 수급자의 취약 특성을 고려하여 이동서비스 지원, 기저질환 등 건강 관리에 대한 의료지원, 돌봄 공백 방지 대책 수립

3. 기관별 임무 및 역할

구 분	임무 및 역할
보건복지부	◆ 위기경보 ‘심각’ 단계 시, 지자체 현장 대응 총괄 지원 ◆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체계 구축하여 지원시스템 확보
지방자치단체 (시설담당)	◆ 지자체장은 관할 지역의 재난사항 대응을 총괄 ◆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, 시설에 피해 발생 시 즉시 현장을 총괄하며 재난현장 대응 및 복지부와 상황 보고체계 유지 ◆ 장기요양기관에 안전사고 발생 시, 돌봄서비스가 끊기지 않도록 전원 등 필요한 조치 강구
국민건강보험공단	◆ 건보공단은 긴급상황 시 신속한 지원시스템을 확보하고, 중앙 및 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현장 적극 지원

Ⅱ

재난상황대응 기관별 역할

1

지자체(시설 소관 담당 부서)

- 지자체는 1차적으로 대피시설로 대피한 수급자가 당일 시설로 복귀가 어려운 경우, 동일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타 시설로 전원조치
 - 지자체는 사전에 관할 장기요양기관의 입소자·종사자 정원 및 현원을 파악하고, 전원 가능한 시설 리스트를 확보
- 의료지원이 필요한 수급자를 위해 보건소(응급의료소) 및 관할 의료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예비 병상 확보
- 전원에 필요한 이동지원(교통수단, 이동지원 인력)을 최대한 확보
 - ※ 지자체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, 보건소 구급차, 시군구 관용차량, 적십자 등 유관기관 관용차, 129 민간구급차, 의용소방대, 자원봉사자 등 (장애인택시, 129 민간구급차는 지자체 재해구호기금에서 비용 집행 가능)
- 지자체는 복지부(요양보험운영과), 장기요양기관, 건보공단 지사와 상시 연락체계 구축
 - 피해 발생, 조치 결과 및 특이사항 발생 시 지자체는 신속하게 현장 상황을 복지부에 보고

< 복지부 - 지자체 보고체계 >



- 사전에 시설 안전점검(가스·소방·전기) 후 안전 확인하고 복귀 조치
 - 추가적인 재난 발생 가능성 고려해 복귀 시점 조정

2

보건복지부(요양보험운영과)

-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, 중앙행정기관, 유관기관, 부내 관련 부서와
상황정보 공유하고 협조체계 구축
 - 관내에서 구급차 수급이 어렵거나 관외 이송이 필요시 소방청,
경찰청, 응급의료 등 이동지원 확보
 - 응급의료 조치 필요시 의료기관 관련 부서 통해 병원(병상) 확보
- 타 지역 장기요양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한 경우 등 부처·지역 간
갈등 상황, 긴급 제도개선 사항 등 조정

3

국민건강보험공단

- 장기요양기관 재난발생 정보 접수 시, 인명피해 발생 여부, 피해
규모, 긴급성 등을 파악하여 복지부 보고하고 지자체 즉시 공유
- 지자체 및 장기요양기관 지원
 - 현장 지원 필요 시, 사전 부여된 임무 확인하고 대응 매뉴얼에
따라 지자체 및 장기요양기관 적극 지원

◆ 건강보험공단 주요 지원사항

- 시설을 도와 수급자 및 종사자 명단 파악
- 지자체를 도와 즉시(당일) 전원 가능 시설 파악해서 지자체 공유
- 지자체 - 피해기관 - 대피기관 간 협의 지원
- 긴급상황 시, 수급자 대피 지원 및 전원 이송지원
- 시설을 도와 타시설로 전원하는 수급자에 요양보호사 등 돌봄 종사자 매칭

① 주요활동

○ 재난상황 정보 인지

- 시설 직원은 재난 상황에 대한 정보를 TV, 라디오,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집하고 수급자에게 재난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알림

○ 재난상황 업무조치

- 재난 발생에 따른 시설 직원들의 담당 업무 내용을 확인
- 야간이나 휴일의 경우에는 소집기준에 따라 직원들을 소집

○ 연락체계 점검

- 지자체, 소방, 경찰, 응급의료, 건보공단 등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비상시 신속하게 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지
- 수급자의 보호자 및 가족 등에게도 사전에 연락처를 확보하여 비상시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준비
- 야간에 재난 발생 시, 시설 주변 의용소방대원들이나 일반 주민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를 사전에 확보

② 방재물자 및 구호품 확보

○ 전기, 수도, 가스의 대체수단 확보

- 태풍 재난으로 인해 발생 되는 정전, 단수, 가스 공급 미흡 등에 대한 자가발전 장치 등의 가동상태를 확인
- 전기, 수도, 가스의 대체 수단을 확보

○ 방재물자 및 구호물품 확보

- 수방자재, 의료약품, 구호세트, 식량, 식수, 생필품 등을 미리 준비

③ 재난 발생 시 대피방법 확인

○ 대피시설 및 전원기관 확보

- 시설 주변에 국가가 지정한 안전한 대피시설을 사전 확인
- 피해시설에 협조적인 인근 시설 등을 전원 기관으로 복수 확보
- 도보로 피난이 어려운 수급자 수를 산출하여 그에 맞는 이동 수단을 확보
- 자체 차량 확보가 어려운 경우 이웃 지역주민이나 공공기관(지자체, 소방, 경찰, 협력병원 등)의 협력을 통해 차량을 확보

○ 대피시설 및 대피방법 적정성 검토

- 대피시설 및 전원시설은 수급자 상태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설을 선정
- 시설의 관리자는 직원,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대피 방법을 알림

- ① 대피유도 및 대피지원을 실시하는 직원은 대피경로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.
 - ② 수급자에게 대피(전원)장소 예상 소요시간,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해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인지시켜 준다.
 - ③ 가족, 보호자 등과의 사전 연락을 통해 관련 사항을 공유한다.

- 수급자마다 대피하는 방법(도보, 휠체어, 구급 차량 등)을 지정하고 직원이 인식할 수 있도록 준비
- 상주 직원 수에 따라 대피로 확보 및 대피 방법을 준비
- 주간이나 야간별로 상황에 따라 대피 방법을 각각 준비
- 안전한 대피경로를 몇 개 확보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
- 대피 시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의료박스, 구호박스, 재난용 구호세트 등을 준비

Ⅲ

행정사항

① 양로시설, 공동생활가정 등 주거 취약 노인의 전원이 필요한 경우

- 장기요양기관으로의 전원 요청 시, 적극 수용

※ 전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지자체 재해구호기금에서 지원

☞ 문의처 :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(044-202-3453)

② 장기요양급여기준 예외지침 마련

- 재난 상황으로 인해 돌봄 서비스 공백 및 급여비용 산정*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여비용 예외지침** 마련

*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에서 기준 규정

** 피해기관 및 대피기관 지원 방안 포함

☞ 문의처 :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(044-202-3493 / 044-202-3505)